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오경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078 발의연월일: 2021. 2. 15.

발 의 자:임오경•박 정•유정주

이수진 • 장철민 • 이규민

고용진 • 박성준 • 박상혁

서영교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한국 여행업협회의 업계 피해 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의하면 2020년 10월 말 기준 조사대상 17,664개 업체 중 폐업 신고완료 업체는 202개, 사실상 폐업상태는 3,953개인 것으로 나타났고 지방의 소규모 업체들도 함께 고사 상태에 빠져있음.

2020년 여행업 전체 매출은 1조 9,198억원으로 2019년 11조 7,949억원 대비 83.7%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며 실직자 역시 4만5천여명에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.

그러나 현재 관광진흥법에는 관광사업자들에 대한 재난 지원 사항 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.

이에 정부가 감염병 확산 등 관광사업자의 경영상 중대한 위기 발생 시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(안 제76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6조의2(재난에 따른 지원) 정부는 감염병 확산 등 관광사업자의 경영상 중대한 위기 발생 시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할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76조의2(재난에 따른 지원) 정
	부는 감염병 확산 등 관광사업
	<u>자의 경영상 중대한 위기 발생</u>
	시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
	한 지원을 할 수 있다.